

감 사 보 고 서

- 유관기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실태 I -

2024. 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2
III. 감사결과	5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 보조사업 운영비 집행 부적정(주의, 통보)	6
(2) 월정직책급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통보)	15
【 국악방송 】	
(3) 방송제작스태프료 지급 부적정(주의)	23
(4)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집행 부적정(주의)	27
(5) 주차비 증빙 관리 및 집행 부적정(주의)	31
(6) 홍보물품 배포 및 관리 부적정(주의)	3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7) 간접보조사업자의 국외여비 집행 관리 부적정(통보)	39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	
(8)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 등 용역 발주·관리 부적정(경고·통보, 주의) ·	42
(9) 참여인력 채용시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미반납(주의, 통보)	6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는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유관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회계검사를 산발적으로 실시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적·체계적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유관기관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2024년 방통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대상 및 중점

최근 회계검사 실시 현황¹⁾ 등을 고려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²⁾라 한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이하 “국악방송”이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³⁾라 한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KCUP”⁴⁾이라 한다) 등 4개 기관을 이번 감사의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사업 전반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국회 논의

1) 최근 방통위 회계검사 실시 시기: KAIT(2020년 11월), 국악방송(2020년 9월), KISDI 및 KCUP(미실시, KISDI는 2018년부터, KCUP은 2022년부터 방통위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3)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4) Korea Communications User Protect association

사항,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후 사전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예비조사(2024. 5. 7.~5. 17., 총 8일)를 거쳐 2024. 5. 20.부터 같은 해 7. 12.까지의 총 2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24. 9. 6.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⁶⁾

1. 설립 목적

KAIT 등 4개 감사대상기관은 [표 1]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방송통신의 발전, 국가 정보통신정책의 수립, 방송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1] 감사대상기관 설립 개요

기관명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립일	주무부처
KAIT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1987. 5. 2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악방송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게 홍보· 보급· 교육하여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00. 2. 14.	문화체육 관광부

5) 2024.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10일간 실지감사 후 감사결과 정리 등을 위해 2024. 7. 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10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함

6)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기관명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립일	주무부처
KISDI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 2. 4.	국무조정실
KCUP	방송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고 방송통신 시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미디어 사회 구축에 이바지	「민법」 제32조	2021. 4. 16.	방송통신위원회

주: 1. 2021~2024년 방통위 보조금 지원 금액 합계(상세 내용은 [표 5] 참조)를 기준으로 기관 순서 내림차순 정렬
 2. 국악방송은 2000년부터, KISDI는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같은 법률 제5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직 현황

감사대상기관의 조직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감사대상기관 조직 현황(2024년 4월 말 기준)

기관명	대표(임기)	임원	조직	정원	현원	비고
KAIT	유영상 ('22. 2. 24.~'25. 2. 23.)	회장 1명 등 총 9명	1사무국 4본부 1센터 4실	124명	165명	SKT 등 41개 회원사
국악방송	-	사장 1명 등 총 10명	1본부 7부 2국	76명	71명	지역방송국: 광주, 대전
KISDI	배경율 ('23. 8. 3.~'26. 8. 2.)	원장 1명 등 총 2명	2단 8실 1센터	174명	182명	연구직 141명
KCUP	강봉구 ('24. 2. 28.~'27. 2. 27.)	회장 1명 등 총 4명	1국 1본부 1실	30명	12명	SKT 등 18개 회원사

주: 국악방송은 전(前) 대표가 2024. 3. 5. 의원면직 후 대표 공석 상태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사업 및 예산 현황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사업 및 업무 현황은 [표 3], 예산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3] 감사대상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 현황

기관명	주요 사업·업무
KAIT	·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등

기관명	주요 사업·업무
국악방송	·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사업 ·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국내외 국악프로그램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교류 및 지원사업 등
KISDI	· 디지털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지능정보화 정책연구 ·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통신 인터넷 방송 및 전파관련 정책연구 ·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규제에 관한 연구 등
KCUP	·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 이용자 보호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 조사연구, 정책건의, 인증 및 지원사업 · 정부, 공공기관, 회원사 등의 위탁사업 등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감사대상기관 예산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KAIT	56,632	56,019	56,165	61,604
국악방송	16,074	16,422	19,130	17,363
KISDI	31,930	33,920	34,431	35,131
KCUP	860	1,261	2,716	3,6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사업 현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통위 보조금 지원 금액은 KAIT 총 29,824백만 원(예산 대비 13%), 국악방송 총 25,138백만 원(예산 대비 36%), KISDI 총 16,470백만 원(예산 대비 12%), KCUP 총 3,701백만 원(예산 대비 49%)으로, 전체 감사대상기관의 보조사업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감사대상기관 보조사업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기관명	세부사업	방통위 보조금(예산 기준)					재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KAIT	기관 총계 (예산 대비 방통위 보조금 비율)	6,167 (11%)	7,495 (13%)	7,590 (14%)	8,572 (14%)	29,824 (13%)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900	1,900	2,312	3,297	9,409	기금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336	2,381	2,239	2,000	8,956	일반회계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1,695	1,596	1,661	1,489	6,441	일반회계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	1,318	1,078	1,148	3,544	기금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206	270	270	236	982	기금
	방송평가 기반조성	-	-	-	372	372	기금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30	30	30	30	120	일반회계
국악방송	국악방송지원 (예산 대비 방통위 보조금 비율)	6,370 (40%)	6,470 (39%)	6,456 (34%)	5,842 (34%)	25,138 (36%)	기금
KISDI	기관 총계 (예산 대비 방통위 보조금 비율)	4,021 (13%)	4,704 (14%)	4,112 (12%)	3,633 (10%)	16,470 (12%)	-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	1,465	2,082	1,482	1,334	6,363	기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800	920	920	830	3,470	기금
	방송평가 기반조성	853	799	829	499	2,980	기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79	379	379	468	1,605	기금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300	300	1,200	기금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24	224	202	202	852	기금
KCUP	기관 총계 (예산 대비 방통위 보조금 비율)	-	143 (11%)	1,536 (57%)	2,022 (56%)	3,701 (49%)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	1,393	1,393	2,786	기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	-	-	500	500	기금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143	143	129	415	일반회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보조사업 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관(부서)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위원회(과과, 과과, 과팀)

내 용

1. 업무 개요

KAIT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3개 보조사업¹⁾에 대해 방통위 과과 등 3개 부서²⁾로부터 방통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매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위 보조사업의 운영비(210목)로 전화·인터넷 이용료, 사옥관리비 등³⁾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3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경우 KAIT에서 2010년부터 수행, 2024년 예산은 1,376백만 원(운영비 403백만 원)이며,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은 2019년부터 수행, 2024년 예산은 62백만 원(운영비 40백만 원)이고,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는 2010년부터 수행, 2024년 예산은 1,489백만 원(운영비 1,297백만 원)임
- 2)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현 과과 과에서 담당,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은 현 과팀 과에서 담당,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현 과 과에서 담당
- 3) ① 전화·인터넷 이용료: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등 2개 사업에서 운영비(210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 ② 사옥관리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등 2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목) 등으로 집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비 집행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인 KAIT는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한 사업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KAIT가 최근 5년 간(2019~2023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3개 보조사업의 운영비(210목)로 집행한 전화·인터넷 이용료와 사육관리비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사업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 전화·인터넷 이용료 집행 부적정

KAIT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부서의 전화 이용료로 월 평균 110만원⁴⁾을 집행하면서 그 중 월 평균 319,987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사업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료의 경우 KAIT는 2019년과 2020년에 전체 부서의 월 평균 인터넷 이용료 742,640원 중 408,240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사업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60,000원을 「인터넷 불편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사업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⁵⁾하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체 부서의 월 평균 이용료 742,640원 중 682,640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사업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나머지 60,000원을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사업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KAIT가 협회 전체의 공통경비인 전화·인터넷 이용료를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배분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증명될 수 있게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 등⁶⁾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전화·인터넷 이용료 중 보조사업에 직접 해당하는 전화·인터넷 이용료를 배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KAIT는 전화·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전화·인터넷 이용료 대부분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2개 보조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집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KAIT **팀**은 2023년 월 평균 682,640원의 인터넷 이용료를 집행하였으나,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을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료를 배분할 경

5) KAIT 전체 인터넷 이용료 월 742,640원 중 274,400원은 2020년까지 일반사업(회비, 임대수입 등)의 경상운영비로 집행, 2021년 이후 방통위 보조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경비로 집행

6) KAIT가 이번 감사기간 중 협회 공통경비인 전화·인터넷 이용료, 사육관리비 방통위 보조사업의 경비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것으로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 KAIT 전체 인원 대비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실제 보조사업에 참여인원 수를 산출하여 보조사업의 비용을 배분,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 KAIT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조사업의 비용을 계산,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 KAIT 전체 부서수로 비용을 안분한 후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다시 배분하여 보조사업의 비용을 계산

4) 2020년까지 KAIT 전체 전화 이용료 월 평균 110만 원을 일반사업(회비, 임대수입 등)의 경상운영비로 집행

우 월 평균 집행액은 29,321원으로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을 고려할 경우 월 평균 집행액은 22,028원으로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월 평균 집행액은 20,914원으로 재산정되는 등 매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협회의 공통 인터넷 이용료 중 최대 661,726원에서 최소 653,319원을 보조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화 이용료의 경우도 같은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KAIT [☞]팀은 2023년 월 평균 319,987원의 전화 이용료를 집행하면서, 매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협회의 공통 전화 이용료 중 최대 310,183원에서 최소 306,242원을 보조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전화·인터넷 이용료의 경우 KAIT에서 [별표 1] “전화·인터넷 이용료 과다집행 명세(KAIT)”와 같이 최근 5년 간(2019~2023년) 보조사업의 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총 49,492,332원을 집행하였으나, 위 참여율기준, 예산기준, 부서배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위 이용료를 각 보조사업에 다시 배분하면 이 중 최대 47,871,103원에서 최소 47,621,108원이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사옥관리비 집행 부적정

KAIT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옥관리비로 2019년 월 평균 22백만 원에서 2023년 월 평균 31백만 원을 집행하면서 그 중 월 평균 1,250,000원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사업의 사업비[관리용역비(210-15목) 등]로, 월 평균 1,700,000원(2019년)에서 월 평균 907,000원(2023년)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사업비[관리용역비(210-15목) 등]로 집행하였다.

한편, 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등 2개 사업을 수행하는 KAIT [☞]팀 등 3개 부서⁷⁾는 방통위 보조사업 외에 장려금 모니터링 등의 협력사업⁸⁾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KAIT가 부서별 공통경비인 사옥관리비를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배분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외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반영하여 보조사업과의 관련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 등⁹⁾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사옥관리비 중 보조사업에 직접 해당하는 사옥관리비를 배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KAIT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 사무실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월 170만여 원의 사옥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였고, 2021년 이후¹⁰⁾ 각 부서에 면적을 기준으로 사옥관리비를 배분하면서 보조사업과 협력사업 등의 수행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팀 등 3개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배정된 사옥관리비 전체를 협력사업의 사업비가 아닌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7) [☞]팀(구 [☞]팀), [☞]팀 2개 부서에서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수행, [☞]팀(구 [☞]팀)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수행
 8) 회원사 기반 외부용역으로 신용정보공공관리, 분실단말기집중관리사업, 자격검정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9) KAIT가 이번 감사기간 중 협회 공통경비인 전화·인터넷 이용료, 사옥관리비를 방통위 보조사업의 경비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것으로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 KAIT 전체 인원 대비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실제 보조사업에 참여한 인원 수를 산출하여 보조사업의 비용을 배분,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 KAIT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조사업의 비용을 계산,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 KAIT 전체 부서수로 비용을 안분한 후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다시 배분하여 보조사업의 비용을 계산
 10) 2020년 방통위 회계감사에서 사옥관리비를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도록 지적받은 이후인 2021년부터는 각 부서별 사무실 면적을 반영하여 [☞]팀에도 배분([☞]팀: '21년 월 726천 원, '22년 월 867,000원, '23년 907,000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KAIT **팀**은 2023년 월 평균 746,000원의 사옥관리비를 집행하였으나, ① 각 보조사업의 직원 참여율을 고려하여 사옥관리비를 배분할 경우 월 평균 집행액은 258,628원으로 ② 전체 예산에서 각 보조사업의 비율을 고려할 경우 월 평균 집행액은 703,282원으로 ③ 전체 부서 수 및 각 부서 내 보조사업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월 평균 집행액은 383,282원으로 재산정되는 등 매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협회의 공통 사옥관리비 중 최대 487,372원에서 최소 42,718원을 보조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옥관리비의 경우 KAIT에서 [별표 2] “사옥관리비 과다집행 명세 (KAIT)”와 같이 최근 5년 간(2019~2023년) 보조사업의 운영비 중 관리용역비 (210-15) 등으로 총 144,837,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위 참여율기준, 예산기준, 부서배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위 사옥관리비를 각 보조사업에 다시 배분하면 이 중 최대 65,301,930원에서 최소 42,370,624원이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KAIT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3개 보조사업 보조금 중 전화·인터넷 이용료, 사옥관리비 등 운영비를 최대 113,173,033원에서 최소 89,991,732원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및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비 등 보조금이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사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 과장, 팀장은 각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및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에서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사용된 운영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¹¹⁾에 따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31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별표 1]

전화·인터넷 이용료 과다집행 명세(KAIT)

(금액단위: 원)

연도	방통위 담당부서	보조사업명	세부비용	예산항목	KAIT 담당부서	지급총액	과다집행액		
							참여율 기준 ¹⁾	예산 기준 ²⁾	부서배분 기준 ³⁾
'19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4,898,880	4,698,240	4,718,154	4,708,113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720,000	718,701	718,972	718,916
'20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4,898,880	4,720,833	4,711,675	4,706,496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720,000	718,905	718,932	718,902
'21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8,191,680	7,856,433	7,865,034	7,892,413
			전화 이용료			3,839,844	3,682,697	3,686,729	3,699,563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720,000	718,914	719,062	719,140
'22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8,191,680	7,866,451	7,917,654	7,902,330
			전화 이용료			3,839,844	3,687,393	3,711,394	3,704,211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720,000	718,937	719,070	719,018
'23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8,191,680	7,839,825	7,927,339	7,940,711
			전화 이용료			3,839,844	3,674,912	3,715,934	3,722,202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720,000	718,866	719,037	719,086
합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인터넷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팀 (구 ☞팀)	34,372,800	32,981,782	33,139,856	33,150,064
			전화 이용료			11,519,532	11,045,003	11,114,058	11,125,977
		소계	45,892,332			44,026,785	44,253,914	44,276,041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료			3,600,000	3,594,323	3,595,073	3,595,062
	총계					49,492,332	47,621,108	47,848,987	47,871,103

주: 1. KAIT 전체 인원 대비 보조사업 참여율로 실제 참여인원 수를 산출 후 비용 배분
 2. KAIT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용을 계산
 3. KAIT 전체 부서수로 비용을 안분 후 해당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반영
 자료: KAIT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사옥관리비 과다집행 명세(KAIT)

(금액단위: 원)

연도	방통위 담당부서	보조사업명	예산항목	KAIT 담당부서	지급총액	과다집행액		
						참여율 기준 ¹⁾	예산 기준 ²⁾	부서배분 기준 ³⁾
'19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시설장비 유지비(210-09)	☞팀 (구 ☞팀) ☞팀	15,000,000	9,751,630	5,611,019	8,122,832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팀 (구 ☞팀)	20,400,000	9,543,723	10,621,267	10,077,972
'20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시설장비 유지비(210-09)	☞팀 (구 ☞팀) ☞팀	15,000,000	10,006,100	4,376,345	8,198,620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팀 (구 ☞팀)	20,389,000	10,130,870	9,603,254	9,304,856
'21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관리용역비 (210-15)	☞팀 (구 ☞팀) ☞팀	14,400,000	9,010,650	4,916,114	8,977,769
				☞팀 (구 ☞팀)	8,400,000	- ⁴⁾	-	-
'22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관리용역비 (210-15)	☞팀 (구 ☞팀) ☞팀	15,000,000	8,106,027	4,338,890	7,493,633
				☞팀 (구 ☞팀)	10,404,000	-	-	-
'23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관리용역비 (210-15)	☞팀 (구 ☞팀) ☞팀	14,960,000	8,752,930	2,903,735	7,817,381
				☞팀 (구 ☞팀)	10,884,000	-	-	-
합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관리용역비 (210-15) 등	☞팀 (구 ☞팀) ☞팀	74,360,000	45,627,337	22,146,103	40,610,236
				☞팀 (구 ☞팀)	70,477,000	19,674,593	20,224,521	19,382,827
		총계			144,837,000	65,301,930	42,370,624	59,993,063

주: 1. KAIT 전체 인원 대비 보조사업 참여율로 실제 참여인원 수를 산출 후 비용 배분
 2. KAIT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용을 계산
 3. KAIT 전체 부서수로 비용을 안분 후 해당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반영
 4. '21년 이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경우 필요경비보다 보조금이 적게 편성·집행되어 과다집행 미발생
 자료: KAIT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월정직책급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관(부서)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위원회(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KAIT는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3개 보조사업¹⁾에 대해 방통위 과 등 2개 부서²⁾로부터 일반회계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매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 관련하여 2019. 1. 28. 실장·팀장에게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로 연간 6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여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표]와 같이 3개의 보조사업 실행예산에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³⁾

[표] 월정직책급 편성 및 집행 현황('19~'24년)

(단위: 천 원, %)

보조사업 (주무부서, 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5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과, 일반회계)	편 성	6,600	6,600	8,000	8,000	8,000	8,000
	집 행	6,600	6,600	8,000	8,000	8,000	-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

1)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2) 과(구 과), 팀(2023. 11. 28. 직제개편 전까지는 과)

3) KAIT는 2013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의 실행예산에 월정직책급을 처음 편성하기 시작하였음

보조사업 (주무부서, 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5월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과, 일반회계)	편 성	-	2,837	2,900	7,100	4,900	4,700
	집 행	-	2,837	2,880	6,959	4,900	-
	집행률	-	100	99.3	98.0	100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팀, 방송통신발전기금)	편 성	-	-	-	7,080	6,500	6,700
	집 행	-	-	-	5,640	6,500	-
	집행률	-	-	-	79.7	100	-

자료: KAIT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22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실행예산 비목 중 ‘직무수행경비(보조비목, 250) - 월정직책급(보조세목, 01)’은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및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실행예산 편성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KAIT의 「단위사업별 실행예산 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월정직책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며, KAIT는 실제로 방통위 보조사업 수행부서장 등 특정 직위 보유자에게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정직책급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등 위 3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경비가 아니므로 KAIT는 월정직책급을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 관련

위 “2항”과 같이 KAIT의 「단위사업별 실행예산 편성지침」 등에는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KAIT는 실제로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KAIT는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19. 1. 28.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실장·팀장에게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로 연간 6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통위 구 ㉮과(현 ㉮과)에 제출하여 같은 해 1. 28.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KAIT는 위 보조사업 월정직책급 예산을 참여인력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전액 보조사업 계좌에서 KAIT의 계좌로 이체하여 KAIT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매월 필요 금액을 월정직책급으로 집행한 것처럼 작성한 엑셀파일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증빙서류로 등록하는 등 [별표]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예산편성 및 용도 외 사용명세”의 “1항”과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들지 않은 월정직책급 계 37,200,000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도 방통위(현 ㉮과)는 KAIT가 신청한 월정직책급이 사업수행계획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동일 금액의 보조금이 월정직책급 외의 용도(용도 불명)로 사용되었다.

나.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등 2개 사업 관련

위 “2항”과 같이 KAIT의 「단위사업별 실행예산 편성지침」 등에는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KAIT는 실제로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KAIT는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및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2020. 1. 31. 및 2022. 2. 17.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장·실장·팀장에게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로 연간 200만 원과 70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통위 ㉮과(현 ㉮팀)에 제출하여 2020. 2. 11. 및 2022. 2. 17.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⁴⁾.

그리고 KAIT는 위 2개 보조사업 월정직책급 예산을 참여인력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일부를 보조사업 계좌에서 KAIT의 계좌로 이체하여 KAIT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수입처리한 금액을 월정직책급으로 집행한 것처럼 작성한 산출내역 문서 파일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증빙서류로 등록하는 등 [별표]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예산편성 및 용도 외 사용 명세”의 “2항” 및 “3항”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들지 않는 월정직책급 계 31,317,000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하였다.

4) 같은 해 9. 16. 예비 83만 7천 원을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받아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예산은 연간 283만 7천 원으로 인상되었음

그런데도 방통위(현 ㉠팀)는 KAIT가 신청한 월정직책급이 사업수행계획서 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 29,717,000원의 보조금이 월정직책급 외의 용도(용도 불명)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KAIT는 방통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등 3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월정직책급 계 66,917,000원을 다른 용도(용도 불명)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은 보조사업에 실제로 드는 경비가 아닌데도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의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 ㉠팀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5)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월정직책급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별표]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예산편성 및 용도 외 사용 명세

1.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주무부서: 현 ㉠과)

(금액단위: 원)

연도	실행예산 편성		KAIT로 계좌 이체 후 용도불명 사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증빙서류
	산출 내역	금액	날짜	금액	용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천 원 × 12개월 × 39.2% 600천 원 × 12개월 × 39.2% 	6,600,000	4.19.	490,440	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 ㉠팀 A 팀장의 2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작성하여 첨부 ㉠팀, ㉠팀 A 팀장의 3~5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추가 작성하여 각각 첨부 ㉠팀, ㉠팀 B 팀장의 6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추가 작성하여 첨부 ㉠팀, ㉠팀 B 팀장의 7월~11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추가 작성하여 각각 첨부 ㉠팀, 2019년 잔여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금액(306,680원)을 엑셀파일 표에 추가 작성하여 첨부 ※ ㉠팀 B 팀장의 12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466,500원임
				852,780		
			5.20.	563,100		
			7.31.	905,900		
				788,300		
			8.21.	182,000		
			9.30.	236,500		
			11.20.	295,700		
				164,000		
			12.20.	772,900		
				1,041,700		
		12.30.	306,680			
		소계	6,600,000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5천 원 × 2명 × 12개월 	6,600,000	4.6.	1,002,200	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 ㉠팀 B 팀장의 1~4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작성하여 각각 첨부 ㉠팀, ㉠팀 B 팀장의 5~11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추가 작성하여 각각 첨부
			4.6.	564,000		
			5.11.	808,400		
			5.29.	468,000		
			7.10.	67,600		
			7.29.	641,500		
			8.31.	480,850		
			10.12.	136,200		

연도	실행예산 편성		KAIT로 계좌 이체 후 용도불명 사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증빙서류					
	산출 내역	금액	날짜	금액	용도						
			11.25.	216,000							
			12.18.	299,500							
			12.18.	1,248,000							
			12.30.	667,750							
			소계	6,600,000							
2021	222천 원 × 3명 × 12개월	8,000,000	4.30.	262,000	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 팀, □ 팀 B 팀장의 1 ~ 7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엑셀파일 표에 작성하여 각각 첨부 					
			4.30.	544,500							
			4.30.	293,000							
			7.20.	279,000							
			7.20.	899,500							
			8.20.	725,500							
			9.17.	67,000							
			11.12.	679,800							
			11.30.	2,124,850							
			12.1.	2,124,850							
			소계	8,000,000							
			2022	직책수행경비			8,000,000	12.30.	8,000,000	불명	□ 팀, 1~11월은 666,000원씩 작성하고 12월은 674,000원으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
			2023	직책수행경비			8,000,000	12.29.	8,000,000	불명	□ 팀, □ 팀의 월정직책급 집행 협조요청 (8,000,000원) 공문 파일 첨부
2024	직책수행경비	8,000,000	-	-	-	-					
합계		45,200,000		37,200,000							

2.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주무부서: 현 □팀)

(금액 단위: 원)

연도	실행예산 편성		KAIT로 계좌 이체 후 용도불명 사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증빙서류
	산출 내역	금액	날짜	금액	용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1명×10%×7개월 2급×1명×10%×3.5개월 2급×1명×20%×8.5개월 4급×1명×17%×3.5개월 	2,837,000	12.30.	2,837,000	불명	□ 팀, □ 팀에서 작성한 2020년 월정직책급 산출내역서(2,837,000원) 첨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1명×5%×12개월 2급×1명×10%×12개월 4급×1명×20%×12개월 	2,900,000	12.1.	2,880,000	불명	□ 팀, □ 팀의 월정직책급 집행 협조요청 (2,880,000원) 공문 파일 첨부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급×1명×10%×12개월 4급×1명×25%×12개월 4급×1명×45%×12개월 	7,100,000	12.30.	6,959,200	불명	□ 팀, □ 팀의 월정직책급 집행 협조요청 (6,959,200원) 공문 파일 첨부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1명×13.3%×12개월 4급×1명×42%×12개월 	4,900,000	12.29.	4,900,000	불명	□ 팀, □ 팀에서 작성한 2023년 월정직책급 산출내역서(4,900,000원) 첨부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1명×13.3%×12개월 4급×1명×40%×12개월 	4,700,000	-	-	-	-
합계		22,437,000		17,576,200		

3.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주무부서: 현 □팀)

(금액 단위: 원)

연도	실행예산 편성		KAIT로 계좌 이체 후 용도불명 사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증빙서류
	산출 내역	금액	날짜	금액	용도	
2022	센터장, 실장, 팀장 직책급	7,080,000	12.30.	5,640,800	불명	□ 팀, □ 팀에서 작성한 2022년 월정직책급 산출내역서(5,640,800원) 첨부
2023	참여연구원 월정직책급	6,500,000	12.29.	6,500,000	불명	□ 팀, □ 팀에서 작성한 2023년 월정직책급 산출내역서(6,500,000원) 첨부
2024	참여연구원 월정직책급	6,700,000	-	-	-	-
합계		20,280,000		12,140,800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방송제작스태프로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국악방송

내 용

1. 업무 개요

국악방송은 「국악방송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매년 교부¹⁾받아 수행하면서 자체 「국악방송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제작스태프, 작가, 프로그램 진행자 등 프리랜서 스태프(이하 ‘스태프’라 한다)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국악방송 제작비 지급규정」 제3조(방송제작비 지급기준 등) 제1항 [별표 1] “VI. 방송 제작 스태프로(R)”에 따르면 보조진행자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특, 가, 나, 다, 라로 등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1일당 25,000원에서 80,000원 까지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²⁾

[표] 방송제작스태프로(보조진행자) 지급 기준³⁾

(금액단위: 원)

등급	지급액	등급적용 기준	비고
특급	80,000	10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	1. 객원연출이라 함은 직원 이외의 자가 프로그램 연출을 하였을 때 지급한다
가급	60,000	7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1) 2021년 6,370백만원, 2022년 6,470백만 원, 2023년 6,456백만 원, 2024년 5,842백만 원

2) 「제작비 지급규정」 제6조(제작비 지급대상자의 등급사정)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이 등급 사정을 할

3) 지급기준에 따르면 각 등급 적용 기준은 각각 'n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방송(국부)은 위 문구를 'n년 이상 방송업무 또는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음

등급	지급액	등급적용 기준	비고
나급	50,000	5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2. 객원연출료가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10분당 1/6을 적용한다 3. 보조진행이라 함은 자료조사, 보조감독(FD), 행정, 현장보조업무, 기술보조 등 방송제작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말한다 4. 등급 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급	40,000	2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라급	25,000	2년 미만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자료: 국악방송

따라서 보조진행자들에게 방송제작 스태프료를 지급할 때에는 방송제작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 적용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악방송 국부 및 국국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맛있는 라디오’ 등 5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보조진행자 C 등 4명에게 스태프로 총 48,410천 원을 지급하면서 정규프로그램인 ‘맛있는 라디오’ 스태프(방송제작스태프) C의 경우 방송업무 경력이 3년으로 지급규정 상 다급(2년 이상 방송업무 및 국악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국악방송 국부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의 등급을 581회에 걸쳐 나급으로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 23,240천 원 보다 5,810천 원 많은 29,050천 원을 지급하는 등 [별표] “방송제작 스태프로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방송이나 국악 경력이 다급에 해당하는 스태프 4명의 등급을 나급으로 산정하여 정당한 대가 38,728천 원보다 9,682천 원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앞으로 방송제작스태프로 지급 시

「국악방송 제작비 지급규정」의 지급기준과 다르게 보수(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방송제작스태프로 과다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연번	부서	성명 (프로그램)	경력		계약기간	출연 횟수 (회)	정당한 대가(A)			실제 지급한 대가(B)			과다 지급액 (B-A)
							등급	단가 (일)	보수 계	등급	단가 (일)	보수 계	
1	궤부		방송	3년	'21. 5. 14. ~ '23. 4. 30.	581	다	40	23,240	나	50	29,050	5,810
			국악	-									
2	궤부		방송	2년	'23. 9. 28. ~ '24. 4. 30.	254	다	40	10,168	나	50	12,710	2,542
			국악	-									
3	궤부		방송	4년	'24. 2. 1. ~ '24. 4. 14.	40	다	48	1,920	나	60	2,400	480
			국악	-									
4	궤국		방송	-	'23. 6. 3. ~ '24. 4. 30.	85	다	40	3,400	나	50	4,250	850
			국악	3년									
계	-	4명	-	-	-	-	-	38,728	-	-	48,410	9,682	

자료: 국악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집행 부적정

기관(부서)명 재단법인 국악방송, 방송통신위원회(☞과)

내 용

1. 업무 개요

국악방송은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등 6개 보조사업(내역사업)에 대해 매년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국악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프로그램사용료 등 수익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국악방송의 보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방통위의 매 연도 국악방송에 교부하는 보조금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통위의 매 연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교부 목적은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국악 관련 방송편성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복지 실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악방송은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방통위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환하거나 ‘국악 관련 방송편성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복지 실현’이라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하고, 방통위는 국악방송으로부

터 수익금 사용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악방송은 2022년부터 방통위 보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외부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를 추진¹⁾하기 위해 2022. 8. 1.과 2023. 2. 7. 방통위(☞과)에 수익금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표 1]과 같이 국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통문화/지역문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방영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²⁾

[표 1] 국악방송 수익금 사용 계획

구분	프로그램명(2022년)	프로그램명(2023년)
전통문화 / 지역문화	- 목포 MBC 천년의 전라도, 어영차 바다야 - TSB 역사스테이 흔적 - EBS 다크프라임 - 각 지역 플랫폼 문화 특집 기획 콘텐츠	- 목포 MBC 천년의 전라도, 어영차 바다야 - EBS 다크프라임 - 각 지역 플랫폼(인방, 지역MBC등) 특집 다크멘터리
역사	- 한국사 탐, KBS 역사스페셜	- 한국사 탐, 역사/전통문화 드라마 시리즈 등
한국 문화 전반	- EBS 클래스 e, MBC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지 등	작동
세계 전통 음악	- Music Voyager 등	- BBC 뮤직다큐멘터리 등
문화 기행	- EBS 한국 기행, 딜라이브 로드다큐 동네 방네엔 등	- EBS 한국 기행 등
특선 영화	- 판소리 북서, 두레소리 등 국악을 소재로 한 특선 영화	작동

자료: 국악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 1) 국악방송은 2019년 12월 TV채널을 개국하고 각 플랫폼사업자(☞, ☞)들과 매월 20% 이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년도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매월 20% 이상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유지하였고, 2021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중 209,631,000원을 외부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 방영권을 구매하는 데 집행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133,790,000원으로 줄자 방통위 보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를 추진하였음
- 2) 국악방송은 2021. 7. 28.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을 전통문화 등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방통위에 보내 구두로 승인을 받았으나, 2020. 12.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국악방송이 납부해야할 예술인고용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자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 방영권은 구매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에 대해 방통위(국과)는 국악방송이 제출한 수익금 사용 계획서대로 사용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 결과 국악방송은 2022. 10. 14. 주식회사 (주)로부터 지구 각지의 야생 동물들의 생존 방식 등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인 ‘생존의 법칙 와일드 라이프’를 구매하는 등 [표 2]와 같이 2022. 10. 14.부터 2023. 12. 29.까지 17회에 걸쳐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273편의 방영권을 총 283,109,750원에 구매³⁾하여 국악 방송 TV 채널에 방영함으로써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

[표 2] 국악과 관련없는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프로그램명	구매처	구매일시	방영횟수	총 구매가격
1	생존의 법칙 와일드라이프		2022. 10. 14.	20	17,600,000
2	행명의대륙 남극		2022. 10. 14.	2	1,760,000
3	형형색색의 지구		2022. 10. 14.	1	880,000
4	클래스		2022. 10. 14.	22	25,245,000
5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022. 11. 10.	28	39,600,000
6	다큐프라임		2022. 12. 20.	52	10,214,750
7	마을을 걷다		2022. 12. 23.	10	16,500,000
8	삭힘의미학		2022. 12. 28.	7	6,160,000
9	역사스태이 흔적		2022. 12. 28.	12	7,200,000
10	구름위를 걷다		2022. 12. 28.	3	3,000,000
11	빅 퀘스천		2022. 12. 28.	10	9,900,000
12	태군노래방		2023. 6.~12.	58	63,800,000
13	나랏말똥2		2023. 10. 6.	5	8,250,000
14	동물의왕국 베스트20		2023. 10. 6.	5	7,500,000
15	월드베스트 세계의 절경		2023. 10. 6.	12	14,400,000
16	해녀밥상		2023. 10. 6.	3	4,500,000
17	벌거벗은 한국사		2023. 12. 29.	23	46,600,000
합계				273	283,109,750

자료: 국악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3) 그 외 2022. 12. 28.부터 2023. 10. 6. 총 3회에 걸쳐 국악 관련 프로그램 27편의 방영권을 60,390,000원에 구매하였음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악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 수익금이 보조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익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주차비 증빙 관리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국악방송

내 용

1. 업무 개요

국악방송은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등 4개 보조사업(내역사업)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매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위 보조사업들의 일반수용비로 유료주차권을 구매하여 집행한 후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있다.

2. 유료주차권 구매 관련 증빙서류 미작성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4개 보조사업에 대한 방통위의 매 연도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위 법령과 같이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증거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악방송은 위 4개 보조사업을 통해 유료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누가 어떤 용도로 주차비를 집행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악방송은 2023. 3. 13.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사업(담당부서: ㉞부)과 관련하여 유료주차권을 210,000원어치 구매한 후 유료주차권 관리대장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표]와 같이 2021. 1월부터 2024. 4월까지 보조금으로 유료주차권을 208회에 걸쳐 51,898,500원어치를 구매하면서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조금으로 구매한 유료주차권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였다.1)

[표] 유료주차권 구매 현황

(금액단위: 원)

부서명	사업명	프로젝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4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㉞부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국악콘서트 판	11	1,155,000	17	2,124,000	23	4,026,000	8	1,890,000
		문화n공감	8	540,000	-	-	-	-	-	-
		소리를 배웁시다	17	3,055,500	21	3,138,000	20	4,770,000	3	810,000
		인생낭독인	-	-	-	-	2	90,000	-	-
		특집 다큐멘터리	-	-	1	60,000	1	217,500	-	-
	국악영상 콘텐츠 제작	공연실황 중계제작	1	30,000	5	289,500	10	735,000	3	240,000
		호락호락 젊은국악	-	-	1	120,000	-	-	-	-
㉞부	정규프로그램 제작	창호에 드린 햇살	13	7,798,500	2	1,305,000	-	-	-	-
		노래가 좋다	2	180,000	-	-	-	-	-	-
		보이는 라디오	-	-	11	7,356,000	13	8,670,000	5	2,025,000
㉞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자료 제작	3	360,000	2	163,500	4	600,000	1	150,000
소 계			55	13,119,000	60	14,556,000	73	19,108,500	20	5,115,000
합 계(건/금액)			208건 / 51,898,500원							

자료: 국악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1) 정산보고서에도 정확한 주차비 집행 목적 등은 기재하지 아니함

3. 구매한 유료주차권을 개인용으로 사용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악방송의 「여비규정」 등에는 임직원의 출퇴근용 주차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국악방송은 실제로 임직원에게 출퇴근 등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임직원의 출퇴근용 주차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국악방송은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유료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직원들의 출퇴근용 주차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²⁾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악방송은 ㉠에서 운영하는 DMS방송제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일부를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 참여를 위해 센터를 방문한 방송 진행자 등 외부인에게 보조금으로 구매한 유료주차권으로 주차비를 지급하고 있다.

2) 소속 직원이 일반 출퇴근 목적 등 개인 용도로 위 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개인적으로 정기주차권을 구매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개인이 주차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그런데 국악방송은 ㉡부 차장(PD) D가 2023. 4. 18. 출근하기 위하여 08:25경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국악방송이 상주한 위 센터 주차장에 입차한 후 같은 날 11:51경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주차권 정산 아이디(ID) ‘D’에 보조금전용카드로 22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퇴근하기 위하여 20:14경 출차하면서 위 주차권 정산 아이디에 적립금 13,500원(1시간당 1,500원 × 9시간, 3시간 무료권 포함)을 정산하여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등 2023. 1. 5.부터 2024. 4. 2.까지 83회에 걸쳐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등 4개 보조사업의 보조금으로 구매한 유료주차권 1,176,000원어치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³⁾, 같은 부서 차장(PD) E가 2023. 4. 10.부터 2024. 3. 4.까지 D와 같은 방법으로 69회에 걸쳐 보조금으로 구매한 유료주차권 462,000원어치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는데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 ① “2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유료주차권 등을 구매하면서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3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구매한 유료주차권을 개인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D는 개인용으로 사용한 주차비 1,176,000원을 2024. 7. 16. 방통위에 자진 반납하였음

4) E는 개인용으로 사용한 주차비 462,000원을 2024. 7. 16. 방통위에 자진 반납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홍보물품 배포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국악방송

내 용

1. 업무 개요

국악방송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사업(내역사업)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¹⁾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프로그램 홍보물품²⁾을 구매하여 청취자, 공개방송 참가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위 사업에 대한 방통위의 매 연도 「보조금 교부조건」³⁾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증거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1월경 국악방송이 방통위에 제출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⁴⁾에 따르면 위 사업은 프로그램 홍보 등을 세부 사업내용으로 하고, 국악방송은 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관련 프로그램의 청취자 이벤트 등 목적으로 홍보물품

1) 2021년 386백만 원, 2022년 486백만 원, 2023년 472백만 원, 2024년 425백만 원

2) 구매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 국악방송지원(세부사업) - 프로그램 제작지원(내역사업) - 프로그램 홍보(내역사업)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1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1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수행계획서 등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홍보물품을 구매하였다.

[표 1] 홍보물품 구매 목적 명세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구매 목적	관련 프로그램명
1	2021. 9. 29.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물품 구매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기타 공개방송 참가자 배포	맛있는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
2	2021. 11. 22.	대전방송국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	프로그램 홍보 및 청취자 참여 선물 등	솔바람 물소리, 꿈꾸는 청춘, 충청풍류 다이어리, 오후의 음악정원
3	2021. 12. 17.	하반기 라디오 홍보물품 제작의 건(2차)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기타 공개방송 참가자 배포	맛있는 라디오
4	2022. 4. 25.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의 건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기타 공개방송 참가자 배포	맛있는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
5	2022. 5. 30.	2022년 국악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쇼핑백) 제작의 건	시청자 참여 이벤트, 공개방송 등의 진행 시 홍보물품 배포를 통한 홍보	-
6	2022. 7. 1.	대전방송국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	대전방송국 프로그램 홍보 및 청취자 참여 선물 등	솔바람 물소리, 꿈꾸는 청춘, 충청풍류 다이어리, 오후의 음악정원
7	2022. 9. 5.	광주국악방송 홍보물품(충전기) 제작	국 프로그램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남도마실, 무돌길산책 등
8	2022. 11. 1.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기타 공개방송 참가자 배포	맛있는 라디오,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9	2023. 8. 28.	2023년 국악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쇼핑백) 제작의 건	시청자 참여 이벤트, 공개방송 등의 진행 시 홍보물품 배포를 통한 홍보	-
10	2023. 10. 27.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의 건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기타 방송 참가자 배포용	한석준의 문화시대, 글과 음악의 온도, 노래가 좋다
11	2023. 11. 21.	프로그램 홍보용 안전봉투(홍보물품) 제작의 건	청취자 선물 발송 등	-
12	2024. 3. 25.	국악방송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홍보물품 제작	국악방송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대외 배포용 홍보물품 제작	-

자료: 국악방송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악방송은 구매한 홍보물품을 당초 구매 목적 등에 맞게 관련 프로그램의 청취자 및 참가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하고, 홍보물품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일자, 배포대상, 배포물품명 등이 포함된 배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악방송은 2021. 9. 29.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물품으로 미니가습기

700개(9,500원/개)를 구매하였는데도, 이 중 일부를 이사회 등 업무관계자(50개), 임원실 손님 등(40개)에게 배포하는 등 해당 프로그램 홍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홍보물품을 사용하고, 30개는 배포대장 작성을 누락하여 누구에게 배포하였는지 알 수 없게 관리하는 등 [표 2]와 같이 2021. 9. 29.부터 2023. 10. 27. 까지 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으로 프로그램 홍보물품 9종을 구매하여 이사회, 프로그램 진행자, 작가 등 해당 프로그램 홍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프로그램 홍보물품 부적정 관리·배포 명세

(단위: 개, 원)

연번	구매일자 (계약일자)	배포부서 ^{주2)}	구매내역			문제점
			품명	수량	단가	
1	2021. 9. 29.		미니가습기	700	9,500	이사회 등 업무관계자에게 50개 배포 임원실 손님 등에게 40개 배포, 30개 소재 불명
			자동우산	700	9,500	이사회 등 업무관계자에게 50개 배포 임원실 손님 등에게 40개 배포, 30개 소재 불명
			3색 볼펜	3,000	450	국악방송 전 부서에 배포
2	2021. 11. 22.		탁상용 미니 온풍기	110	36,450	배포대장에 청취자 등에 20개 배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명 및 배포방법 등 미기재
3	2021. 12. 17.		항균 마스크	600	5,500	40개 소재 불명 이사회 등 업무관계자에게 50개 배포
4	2022. 7. 1.		휴대용 선풍기	120	8,330	배포대장에 청취자 등에 20개 배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명 및 배포방법 등 미기재
5	2022. 9. 5.		멀티충전기	70	15,125	프로그램 진행자, 작가 등에게 7개 배포
6	2022. 11. 1.		블루투스 이어폰	400	13,000	기관장 손님 선물 및 기관 홍보 목적으로 30개 배포 제작 샘플 및 기관 홍보 목적으로 10개 배포
			보조배터리	800	10,000	협찬사 40개, 제작 샘플 및 기관 홍보 24개, 직무교육 강사 선물 2개, 캠페인 제작 성우 등 제작진 선물 2개, 기관 홍보 30개, 업무협약 관련 기관 홍보 12개 등 배포

주: 1. 연번 1번(미니가습기, 자동우산), 3번(항균마스크) 소재불명 건의 경우 당시 담당자가 신규사원, 인턴 등에게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 부재로 사실관계 확인 어려움
2. 국악방송은 홍보물품 구매 시 수요부서가 ㉠부에게 구매 요청하면 ㉠부가 직접(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 또는 ㉠부(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에서 계약체결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이 건 홍보물품을 부적정하게 관리·배포하는 데 관여한 부서를 확인할 수 없어 배포대장 등에 기재된 최종 배포부서를 기재하였음

조지할 사항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앞으로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매한 홍보물품을 당초 구매 목적 등에 맞지 않게 배포하거나, 배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통 보

제 목 간접보조사업자의 국외여비 집행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KISDI는 2022년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2022. 4. 21. [가] 주식회사(이하 “[가]”라 한다)를 위 보조사업 중 「방송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4. 29. 등 [가]와 사업수행 계약[사업기간: 2022. 4. 22.~12. 31.,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금 180백만 원(해외사업자 재정적 기여금 20백만 원 별도)]¹⁾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KISDI는 2023. 2. 20. [가]로부터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가]의 간접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였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의 「여비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교통비는 실제로 여행하는

1)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금액은 2022. 8. 4. 160백만 원에서 180백만 원[해외사업자 재정적 기여금액 20백만 원(가 제작사 연출자 입금 9.6백만 원, 현지 작가료 9백만 원, 사업추진비 1.4백만 원) 별도]으로 변경되었음

교통수단(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등)에 의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통위의 위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등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인 [가]가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 지출 시 항공권을 우선 구매하여 집행증빙 등을 정산 보고를 한 후, 저가의 항공권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정산 보고한 항공권 구매금액과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가]는 위 간접보조사업의 공동제작 협정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직원 등 2명의 [가] 국외출장²⁾과 관련하여 2023. 2. 20. 위 2명의 [가] 왕복 항공권 일반석 Y클래스 구매에 총 3,300천 원을 집행(구매일: 2022. 12. 31.)한 것으로 KISDI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실제 출장³⁾ 시에는 항공권 종류를 당초 일반석 Y클래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Q, K, S클래스로 변경하여 실제로는 항공권 구매에 총 1,592,300원만⁴⁾ 집행하였는데도 당초 정산 보고한 항공권 구매 집행금액 3,300,000원과 실제 집행된 항공권 구매 금액 1,592,000원의 차액인 1,707,7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KISDI는 2023. 2. 20. [가]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면 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로 하여금 항공권 구입 차액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2) I(제작책임자): 2023. 2. 21.~2. 23.(2박 3일), J(외주제작 PD): 2023. 2. 21. ~ 2. 28.(7박 8일)

3) I: 2023. 3. 6. ~ 3. 8.(2박 3일), J: 2023. 3. 6. ~ 3. 13.(7박 8일)로 출장 일자 변경

4) I: 인천 → 하노이(Q 클래스), 하노이 → 인천(K 클래스) 총 874,400원, J: 인천 → 하노이(Q 클래스), 하노이 → 인천(S 클래스) 총 717,900원

조치할 사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가]가 해외출장계획을 변경하면서 항공권 가격에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미반납한 여비 1,707,700원을 환수하여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방송통신위원회

경고·통보·주의요구

제 목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 등 용역 발주·관리 부적정

기관(부서)명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방송통신위원회(과)

내 용

1. 업무 개요

KCUP은 2023. 1. 13. 방통위의 청소년 보호 앱(사이버안심존, 사이버안심드림)¹⁾ 및 관련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등 내용²⁾의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 30. 방통위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 보조금(1,393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위 사업은 [가](이하 “[가]”³⁾)라 한다)가 기존에 수행하던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보조사업을 KCUP이 인수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KCUP은 같은 해 2. 20. [가]와 ‘KCUP이 새로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신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 [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KCUP은 사업인수 전까지 발생한 운영비용을 [가]에 지급’하는 내용의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관련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KCUP은 같은 해 3. 3. 조달청에 의뢰하여 위 보조사업의 일부인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 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

1) 사이버안심존: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용 앱,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 언어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폰 용 앱
2) ① 청소년 보호 앱 및 관련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② 청소년 보호 앱 보급 활성화, ③ 기타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태블릿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운영
3) Korea Metaverse Industry Association

입찰공고(3. 16.)를 한 후 같은 해 4. 18. 단독 응찰한 [재] 주식회사(이하 “[재]”라 한다)와 수의계약⁴⁾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KCUP은 같은 해 4. 25. 청소년 보호 앱 2종(사이버안심존 및 스마트안심드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등의 사유로 [재]와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통합 앱 개발(4~8월 / 912,114천 원), 운영·유지관리(9~12월 / 253,776천 원), 금액 합계 344,890천 원)에 합의한 후 [재]의 용역수행을 관리·감독하였다.

그 후 KCUP은 2023. 11. 20. 조달청에 의뢰하여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SW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12. 5.)를 하고 같은 해 12. 28. 단독 응찰한 [재]와 수의계약(금액: 660,0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4. 1. 31. 방통위에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19. 방통위로부터 보조금(1,393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받아 같은 해 7월 현재 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공고 부적정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2023년 및 2024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위 보조사업 수행 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⁵⁾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이하 “긴급

입찰공고”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에 대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때에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입찰참가 희망자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용역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관련 인수인계 협약서」에 첨부된 「2023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갑”(KCUP)이 추진하는 신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데이터베이스 이관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는 2023년 1, 2월에 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KCUP은 같은 해 3. 8. [재]에 1, 2월 운영·유지관리비 계 157,931,021원을 지급하였으며, 3월에도 [재]가 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KCUP은 같은 해 3. 3. ‘본 사업은 1년 365일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부예산이 ’22년 12월에 통과되고 ’23년 1월 수행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유지보수 사업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일반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조달청에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하였다.

4) 내용: 통합 앱 기획·설계, 소프트웨어 기능고도화, 운영·유지관리, 기간: 4~12월, 금액: 571,000천 원
5)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위 “③ 및 ④”에 준하는 경우, 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원(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 미만인 경우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 해 3. 16.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같은 해 3. 31.인 것으로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KCUP은 단독 응찰한 ㉠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 18.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KCUP은 2023. 11. 20.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위 사업의 경우 ㉠과 청소년 보호 앱의 개발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4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일정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KCUP은 같은 해 11.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근거로 조달청에 긴급입찰공고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 해 12. 5.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같은 해 12. 19.인 것으로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KCUP은 단독으로 응찰한 ㉠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 28.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금액 산정 부적절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의 예정가격 결정 방식으로 조사한 기초금액(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⁶⁾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대가산정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⁷⁾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후 유지관리 효율⁸⁾을 곱하여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사업비’는 운영업무에 따른 필요 직무를 고려하여 투입공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직무별 투입공수에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⁹⁾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 운영을 포괄하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투입공수 방식만으로 대가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용역

KCUP은 2023. 3. 3.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방침을 수립하면서, 용역발주에 필요한 제안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그중 4개를 추첨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7)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 등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유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입공수 방식(과거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

8)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효율(10~15%)을 결정

9)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용비 혼합방식으로서 ‘일상운용이나 지원 업무는 투입공수 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고정비)하고, 보완 및 개선활동 업무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변동비)하는 고정비/변동비 방식도 있음

요청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다.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요구사항은 사이버안심존 앱 통합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¹⁰⁾, 앱 관리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 운영 분야¹¹⁾, 장애발생 시 대응 및 조치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¹²⁾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용역의 발주를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관리 등 각각의 유형에 맞는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KCUP은 사이버 안심존 앱 통합 등 소프트웨어 개발 등 위 사업의 모든 과업에 대하여 투입공수 방식¹³⁾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기초금액을 580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 해 3. 16. 위 용역을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하면서 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571,300천 원)을 산정하였고, KCUP은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사유로 **제2차**와 수의계약(계약금액: 571,000천 원)을 체결함으로써 임의로 산정한 기초금액을 토대로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

2)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KCUP은 2023. 11. 20.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방침을 수립하면서, 용역발주에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다.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요구사항은 사이버안심존(통합) 앱 및

10) 태블릿PC용 유헤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 개발, 자녀 위치정보 기능 개선, AI 챗봇 개발 등
 11) 중독상담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통계분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민원 응대 및 관리 등
 12)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관제 및 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등
 13) 예)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평균임금(4,498,492원) × 투입월수(3개월) = 13,495,476원

웹사이트 등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¹⁴⁾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사이버안심존(통합) 앱 기능을 개선¹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시스템은 2023년도에 기존의 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와 사이버안심드림 소프트웨어를 통합[사이버안심존(통합), 개발비 91,114천 원]하고 운용 방식 또한 온프레미스 방식(사용자가 물리적 설비를 갖추어 운용)¹⁶⁾에서 클라우드 방식(가상 서버를 빌려서 운용)¹⁷⁾으로 변경하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현재가치로 산정한 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등 유지관리, 운영, 기능개선 등 각각의 유형에 맞는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KCUP은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현재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기능개선 등 위 사업의 모든 과업에 대하여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¹⁸⁾ 기초금액을 671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 해 12. 5. 위 용역을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12. 15.) 하면서 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660,930천 원)을 산정하였고, KCUP은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사유로 **제2차**와 수의계약(계약금액: 660,000천 원)을 체결

14) 사이버안심존(통합)(앱, 웹사이트), 과의존 상담관리 프로그램(웹사이트),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웹사이트), 이용행태 통계분석(웹사이트)
 15) 인앱결제 방지기능 추가 등
 16) H/W: 서버(수량 6), 백업(수량 1), 네트워크(수량 8), 스토리지(수량 1), 소프트웨어: 백업(수량 1), 데이터베이스(수량 2) 등(제2차)가 2023. 2. 1. 방통위에 보낸 문서(방통위 공고문 제2023-04호 관련 재질의)에 따르면 시스템 가격은 약 19억 원(개발비 7.8억 원, 자산 11.3억 원)임
 17) 제2차가 2024. 5. 23. 발행한 확인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월 임대료는 3,000,000원임
 18) 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IT PM(고급) 평균임금(8,588,933원) × 투입월수(12개월) × 투입률(42%) = 42,948,101원

함으로써 임의로 산정한 기초금액을 토대로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

4. 실적 및 투입인력 이력을 검증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업수행 실적이나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 실적이나 이력을 명확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용역

KCUP은 2023. 3. 3. 조달청에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뢰한 후 같은 해 4. 5. 단독으로 응찰한 [가]의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요사업 내용 및 유사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련 실적을 제안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별지 서식 2'[주요사업내용(최근 3년간)]¹⁹⁾에 따르면 하도급은 발

19) 주요사업내용(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타사와 권소사업 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전화 번호			
계								

○ 하도급은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교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주체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교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력투입 계획과 관련하여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기재하고,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²⁰⁾

그런데 [가]는 제안서에 최근 3년간 실적 5건을 제출하면서, '별지 서식 2'의 '발주처'란을 '주관기관'란으로 수정한 후 원도급회사를 기재하고 비교란에 발주처를 기재하고,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수행실적증명서의 '증명서 발급기관'²¹⁾란을 공란으로 둔 채 하도급 실적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가]는 투입인력 9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등급 현황 및 이력사항을 제출하면서 [별표] "투입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²²⁾ 검토결과"와 같이 부장 K(고급) 및 과장 L(중급)은 제출된 이력사항에 따르면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등급을 표기하였고, 나머지 7명은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KCUP은 [가]로 하여금 실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잘못된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수정하도록 보완요구하지 않고, 2023. 4. 5.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평가[평가위원회(7인) 구성, 기술능력평가 배점한

20)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1) 기관명,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를 기재하고 기관의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음

22) KCUP은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관련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기술등급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도(90점²³)의 85%(76.5점) 이상인 경우 적격]를 실시하여 적격(90점 만점에 81.49점)으로 평가한 후 같은 해 4. 18. [OO]와 계약(571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2)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KCUP은 2023. 11. 20. 조달청에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뢰한 후 같은 해 12. 21 . 단독으로 응찰한 [OO]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적격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2023년도에 발주한 용역의 제안요청서와 같이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교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²⁴⁾

그런데 [OO]는 제안서에 최근 3년간 실적 6건을 제출하면서, 위 “4.-나.-1)항”과 같이 하도급 관련 서식을 변경한 후 수행실적증명서의 ‘증명서 발급기관’²⁵⁾ 란을 공란으로 두고 하도급 실적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OO]는 투입인력 11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등급 현황 및 이력사항을 제출하면서 [별표] “투입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²⁶⁾ 검토결과”와 같이 소

장 M(특급), 이사 N(특급), 대리 O(중급)는 제출된 이력사항에 따르면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등급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8명은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KCUP은 [OO]로 하여금 실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잘못된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수정하도록 보완요구하지 않고, 2023. 12. 21.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평가[평가위원회(8인) 구성,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90점)²⁷⁾의 85%(76.5점) 이상인 경우 적격]를 실시하여 적격(90점 만점에 82.5점)으로 평가한 후 같은 해 12. 28. [OO]와 계약(660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5.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용역의 과업범위 설정 부적정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KCUP은 2023년도에 청소년 보호 앱 2종(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을 통합하고, 청소년 보호 앱을 고도화²⁸⁾하며, 앱,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KCUP이 2023. 2. 20. [OO]와 체결한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관련 인수·인계 협약」에 따르면 ‘KCUP에서 새로운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신규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까지 [OO]에

23) 제안업체 일반(10점; 경영 안정성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사업수행부문(45점; 유지보수 업무의 이해도 및 수행관리계획 등), 사업관리부문(25점;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등), 지원부문(10점; 투입인력 보유기술 수준 및 규모 적정성 등)

24)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5) 기관명,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를 기재하고 기관의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음

26) KCUP은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관련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기술등급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27) 전략 및 방법론(15점;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추진체계), 수행계획(30점; 기능개선, 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수행기반(10점; 수행환경, 보완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25점; 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프로젝트 지원(10점; 인수인계, 기술지원)

28) 자녀 위치정보 제공 확대(아이폰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AI 챗봇 도입, 태블릿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등

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KCUP은 사업 인수 전까지 발생한 운영비용(인건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을 ㉔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KCUP은 ㉔㉔가 종전의 앱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동안 청소년 보호 앱 2종을 통합하여 신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㉔㉔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인계받아 신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면서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KCUP은 ㉔㉔와의 협약이 종료²⁹⁾되지 않은 시점인 2023. 3. 3. 조달청에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해 4. 1.부터 12. 31.까지 종전의 청소년 보호 앱 2종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능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8. ㉔㉔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과업내용: 통합 앱 기획·설계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앱 등 소프트웨어 운영, 유지관리, 기간: 4~12월, 금액: 571,0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체결 이후 ㉔㉔가 위 협약을 근거로 청소년 보호 앱 2종 및 관련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인계를 거부함에 따라 ㉔㉔가 4월부터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한다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KCUP은 2023년 8월까지 ㉔㉔가 종전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고 그동안 ㉔㉔가 통합 앱을 개발한 후 ㉔㉔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인계받아 9월부터 ㉔㉔가 통합 앱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운영·유지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

29) 위 협약에 첨부되어 있는 「2023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KCUP)이 추진하는 신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DB 이관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

25. ㉔㉔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계약대금을 변경[과업내용(기간, 금액): 통합 앱 개발(4~8월, 912,114천 원),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9~12월, 253,776천 원)³⁰⁾, 금액 합계 344,890천 원]하였다.

그 결과 KCUP이 당초 ㉔㉔가 협약대로 종전의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기간 동안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후 ㉔㉔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인계받아 신규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내용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했다면 아꼈을 수 있었던 조달수수료 1,632,520원³¹⁾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6.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부적정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³²⁾로 구성되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예규 제16조 제1항 및 제53조 제4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³³⁾을

30) 유지관리에는 태블릿PC용 유헤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 개발, 자녀 위치정보 기능 개선, AI 챗봇 개발 등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외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31) KCUP은 2023. 4. 24. 계약금액 571,000천 원 기준 조달수수료 4,417,120원을 납부하였으나, 변경된 계약금액 344,890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 조달수수료는 2,784,690원이고, 두 조달수수료의 차액은 1,632,520원임

3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33)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부칙<제2010-52호,2010.2.26.> 제4조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사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산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임의 조정

KCUP은 위 “5항”과 같이 2023. 4. 18. [표]와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SW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표]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인계를 거부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4. 25. [표]와 [표]와 같이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합의하였다.

[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명세

(금액단위: 천 원)

분야 구분	당초			조정		
	과업내용	기간	금액	과업내용	기간	금액
SW개발	• 통합 앱 기획·설계 • 기타 SW ³⁴⁾ 개발	4~12월 (9개월)	571,000	• 통합 앱 개발 완료	4~8월 (5개월)	91,114
SW운영	• 종전 앱 2개 및 관련 HW·SW 운영			• 통합 앱 및 관련 SW 운영	9~12월 (4개월)	253,776
SW유지관리	• 종전 앱 2개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 통합 앱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 기타 SW ³⁴⁾ 개발		
합계	-	4~12월 (9개월)	571,000	-	4~12월 (9개월)	344,890

주)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신고 SW, 자녀 위치정보 기능 개선, AI 챗봇 등 자료) KCUP과 [표]의 계약서 및 변경 합의서 내용 재구성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SW개발 분야의 경우 당초 통합 앱을 기획·설계만

하러다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일부 공정(구현·시험³⁴⁾)이 추가되었고, SW운영·유지관리 분야의 경우 당초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종전 앱 2개 및 관련 HW·SW를 운영·유지관리하러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통합 앱 및 관련 SW를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과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기타 SW 개발)에는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대가를 산정하고,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앱 및 관련 HW·SW)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새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KCUP은 당초 [표]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위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통합 앱 개발 과업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기능접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데도 [표]로부터 투입공수 방식의 견적서(금액: 91,114천 원)를 제출받아 개발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외 개발·운영·유지관리 과업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을 월간 금액으로 환산(571,000천 원 / 9개월 = 63,444천 원)하여 조정된 운영·유지관리 기간에 적용(63,444천 원 × 4개월 = 253,776천 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대가를 산정(91,114천 원 + 253,776천 원 = 344,890천 원)하였다.

2) 과업내용을 축소하고도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KCUP은 2023. 1. 30. 방통위에 청소년 보호 앱 통합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아이폰용 자녀 위치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365일 24시간 양방향 고객센터

업 대가의 기준은 2012. 2. 26. 폐지되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대체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하였음

3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구현 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4단계로 되어 있음

를 위한 AI 챗봇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KCUP은 같은 해 3. 3. 아이폰용 자녀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및 AI 챗봇 개발 등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후 같은 해 3. 29. [2023]로부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작성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8.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사업 추진 중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아이폰 용 자녀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및 AI 챗봇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2023]와의 계약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한 후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KCUP은 당초 [2023]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있다가 같은 해 8. 31. 방통위에 아이폰용 자녀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및 AI 챗봇 개발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사업수행계획 변경 신청서³⁵⁾를 제출하여 같은 해 9. 6. 승인을 받은 후 [2023]와 위 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7.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개발 대가를 지급

가.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고, 검

35) 관리용역비(보조세목) 예산을 749백만 원에서 890.3백만 원([2023] 용역비 344,890천 원, [2023] 유지관리비 545,444천 원)으로 증액

사하는 자는 검사조서³⁶⁾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개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고 완료가 확인된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KCUP은 위 “6-나-1)항”과 같이 2023. 4. 25. [2023]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보호 통합 소프트웨어(앱 및 웹페이지)를 개발(개발비 91,114천 원) 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통합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합의하였다.

그 후 KCUP은 같은 해 6. 2. [2023]로부터 청소년 보호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대금(1차 기성금 27,494천 원) 청구를 받아 같은 해 6. 7. 지급한 후, 같은 해 7. 26. [2023]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잔금 63,620천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았다.

그런데 위 잔금청구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같은 해 7. 25. 현재 통합 웹페이지의 경우 총 30개 작업 중 완료 12건, 진행 6건, 미착수 12건으로 진행률이 40%인 것으로 되어 있고, 통합 앱의 경우 총 55개 작업 중 완료 20건, 진행 21건, 미착수 14건으로 진행률이 36%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KCUP은 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같은 해 7. 28. [2023]가 청구한

36) 위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청소년 보호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잔금 63,620천 원을 지급하였다.

위 “2항” 내지 “7항”과 같이 KCUP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면서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긴급입찰공고를 하거나 ②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거나 ③ 실적 및 투입인력 이력을 검증하지 않고 제안서를 평가하거나 ④ 용역의 과업범위를 잘못 설정하여 기초금액을 과다 산정하거나 ⑤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⑥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개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을 다수 위반하였다.

그런데 방통위(☞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KCUP의 보조사업 수행실태를 지도·감독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회장은 ① 보조사업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데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고)

② “3항”과 관련하여, 「2024년도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사업」 용역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다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과장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보조사업에 따른 용역 사업을 발주·관리하

면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³⁷⁾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별표]

투입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등급 검토결과

1. 2023년도 영역 제안서

연번	투입인력 이력사항			검토 결과	
	직·성명	SW 기술등급	이력	기술등급 충족여부	사유
1		특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특급) 고급 취득 후 3년 경력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2		고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3		고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4		중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5		초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사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6		중급	자격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음
			학위		
			경력		
7		초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8		초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사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9		고급	자격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음
			학위		
			경력		

자료: KCUP 제출자료 재구성

2. 2024년도 영역 제안서

연번	투입인력 이력사항			검토 결과	
	직·성명	SW 기술등급	이력	기술등급 충족여부	사유
1		특급	자격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특급) 고급 취득 후 3년 경력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음
			학위		
			경력		
2		특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특급) 고급 취득 후 3년 경력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3		고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4		중급	자격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고, 경력은 SW기술자 기준에 1년 7개월 미달됨
			학위		
			경력		
5		초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충족여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위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6		초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충족여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위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7		특급	자격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특급) 고급 취득 후 3년 경력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이력사항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음
			학위		
			경력		
8		특급	자격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특급) 고급 취득 후 3년 경력 (고급) 중급 취득 후 3년 경력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		

연 번	투입인력 이력사항			검토 결과	
	직·성명	SW 기술등급	이력	기술등급 충족여부	사유
			경력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9		중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급) 기사자격 취득 및 3년 경력 ▪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취득시점을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10		초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 충족여부: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사자격 및 학위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11		초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초급) ①기사자격 취득 ②전문학사 이상 취득 ▪ 충족여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학위 취득여부를 알 수 없음
			학위		
			경력		

자료: KCUP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참여인력 채용시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미반납

기관(부서)명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방송통신위원회(☞과)

내 용

1. 업무 개요

KCUP은 2022년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방통위 ☞과로부터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인건비는 개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¹⁾, 보조금 교부조건, 협약서 등 사업수행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KCUP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참여인력의 참여기간, 인건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수행계획서 상 참여인력의 참여기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실제 참여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 서식까지, 제3호의1 서식에 참여인력 현황(직급, 성명, 소속부서, 참여기간, 참여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간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KCUP은 2022년도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보조사업 참여인력으로 2022. 1. 17. 대리 P를 채용하고, 같은 해 1. 20. P에게 2022. 1. 17.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1월 급여 1,367,985원(개인별 기준 단가 280만 원에 1. 17.부터 1. 31.까지의 참여기간 및 참여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을 KCUP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따라서 KCUP은 위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P의 참여기간, 참여율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때에 P의 참여기간을 1. 17.부터 12. 31.까지로 산정하고, 인건비도 해당 기간 동안 인건비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KCUP은 같은 해 2. 16. 방통위에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P의 참여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산정하고 인건비로 1월 급여 280만 원 전액을 집행(연간 인건비 총액은 123백만 원)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같은 해 2. 18. 방통위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KCUP은 P의 참여기간 등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1. 20. P의 보조사업 미참여 기간(2022. 1. 1.부터 2022. 1. 16.까지)에 해당하는 인건비 1,432,015원을 팀장 Q에게 추가 지급²⁾하여 당초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상의 P 등 4명의 참여인력에 대한 1월 급여 10,250,000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

2) KCUP이 2022. 2. 16. 방통위에 제출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상 Q의 참여기간은 2022. 1. 1.부터 12. 31.까지, 참여율은 65%로,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따른 Q의 개인별 기준 단가는 460만 원임. 그러나 KCUP은 1월 Q에게 개인별 기준 단가 460만 원에 P의 1월 급여 미지급액 1,432,015원을 포함하여 총 6,032,015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거로 같은 해 6. 2. 보조금 계좌에서 KCUP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KCUP이 2023. 2. 28. 방통위에 2022년 1월 급여 집행금액이 10,250,000원인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KCUP으로 하여금 P의 보조사업 미참여에 따른 1월 급여 미지급액 1,432,015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회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인력의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절차를 이행하거나 실제 참여기간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³⁾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로부터 참여인력의 보조사업 미참여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서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 잔액과 이자 등 정산금을 1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에 반납하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주무부서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무단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집행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